



| 분양문의 1566-3700 |

시행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시공 現代建設

청라지구 내에 위치한 학교 시설은 향후 교육청 계획에 의해 건립될 예정입니다

세계적 만남

청라 국제 금융·레저도시와 조경면적 57%의 웰카운티가 만났다!

국제 금융·레저도시로 개발되는 청라에 세계 수준의 고품격 아파트가 찾아옵니다.
단지중앙에 열린잔디광장을 비롯해 조경면적이 57%인 푸르름이 가득한 곳 - 웰카운티의 오너가 되십시오.
글로벌 시티, 글로벌 라이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상기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색채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라 17단지 웰카운터 1차 입주자 공급안내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라지구내에 위치한 학교시설은 향후 교육청 계획에 의해 건립될 예정입니다.

☐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 A-17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7개동 총 692세대(국민주택)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3자녀 특별공급 포함) 104세대 포함]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달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건립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일반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일반공급	㎡	형별	전용	주거공용	소계	계			3자녀	기타			
국민 주택	인천시	수도권	인천시	수도권	2008000409 (01)	2008000410 (01)	112.9266	A	84.7379	28.1887	112.9266	44.5081	157.4347	66.3291	132	3	9	13	107
	81853-01	81854-01	81855-01	81856-01	2008000409 (02)	2008000410 (02)	112.6289	B	84.4963	28.1326	112.6289	44.3812	157.0101	66.1400	280	8	45	28	199
	81853-03	81854-03	81855-03	81856-03	2008000409 (03)	2008000410 (03)	113.2968	C	84.9792	28.3176	113.2968	44.6348	157.9316	66.5180	280	8	31	28	213

(단위 : ㎡, 원)

구분	주택형	층별 세대수	층별구분	분양가격			총분양금액	계약금						잔금 (입주자정일)		
				건축비	대지비	계		1회	2회	중 도금 (납 부 일 정)					6회	
국민 주택	112.9266	3	1층	158,140,886	113,659,114	271,800,000	271,800,000	27,180,000	27,180,000	27,180,000	27,180,000	27,180,000	27,180,000	27,180,000	27,180,000	54,360,000
				163,940,886		277,600,000	277,60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55,520,000
				174,450,886		288,110,000	288,110,000	28,811,000	28,811,000	28,811,000	28,811,000	28,811,000	28,811,000	28,811,000	28,811,000	57,622,000
		189,440,886	303,300,000	303,300,000		30,330,000	30,330,000	30,330,000	30,330,000	30,330,000	30,330,000	30,330,000	30,330,000	60,660,000		
		151,585,856	260,600,000	260,600,000		26,060,000	26,060,000	26,060,000	26,060,000	26,060,000	26,060,000	26,060,000	26,060,000	52,120,000		
		157,085,856	266,100,000	266,100,000		26,610,000	26,610,000	26,610,000	26,610,000	26,610,000	26,610,000	26,610,000	26,610,000	53,220,000		
	112.6289	14	2층	167,065,856	109,014,144	276,080,000	276,080,000	27,608,000	27,608,000	27,608,000	27,608,000	27,608,000	27,608,000	27,608,000	27,608,000	55,216,000
				187,585,856		296,600,000	296,600,000	29,660,000	29,660,000	29,660,000	29,660,000	29,660,000	29,660,000	29,660,000	59,320,000	
				155,769,919		267,400,000	267,400,000	26,740,000	26,740,000	26,740,000	26,740,000	26,740,000	26,740,000	26,740,000	53,480,000	
		161,369,919	273,000,000	273,0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56,600,000			
		171,569,919	283,200,000	283,20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56,640,000			
		113.2968	14	2층		171,569,919	111,630,081	283,200,000	283,20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5. 발코니 확장 비용

(단위 : 원)

구분	112.9266 [A]	112.9266 [A] - 디락방	112.6289 [B]	112.6289 [B] - 디락방	113.2968 [C]
확장비용	3,780,000	3,850,000	3,590,000	3,590,000	4,020,000
확장면적 (㎡)	13.3919	13.3919	13.7205	13.7205	15.6552

※ 발코니확장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확장시 확장비용은 미 확장 세대의 기본품목을 감한 가격임.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각 주택형별 공회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회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주택가격(분양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입주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시 발송 전에 납부하여야 할 단 계약금 2차 부터 지정 납입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되며, 납부 순서는 연체금을 공제한 후 지정 납부금액 공제순으로 계산됨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 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차메인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음.

● 잔금은 사용감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 85㎡ 이하의 국민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됨. 또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재당첨 제한)
- 투기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당사가 일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총 분양대금의 40% 이내) 가능하며, 계약금(1·2차)은 대출이 불가하며, 개인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은행 최초 영업일** 기준으로 함.

6.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마감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마이너스 옵션으로 신청하여 설치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음. (단 개발품목 선택은 불가함)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천장	목재(오크, 문란, 도어록 및 경철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재(문틀, 현관문, 발코니사시, PVC 내부창호, 칠재문, 디지탈도어락, 다용도실 도어(B타입에 한함))
바닥재	바닥재(마루판,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갈레밭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	바닥난방
벽	벽지, 장식벽 (벽지, 타일, 래핑 등)	초배 또는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 반자틀림 (롤림), 가실유물천정	초배 또는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욕실등	매입등, 배선 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커튼박스)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디샤워기 비데, 수전 등) 샤워부스, 대리석 선반, 욕실액세서리, 욕실장, 욕실 배기팬, 바닥배수구, 재료분리대, 원적외선 복사난방 등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금수 난방 등 매립배관, 단부보호처리), 욕실 비상문,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스리브,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주방기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TV, 수전, 음식물탈수기, 핸드드레싱기 절수밸브, 4구 가스쿠포 및 오븐렌지	설비배관(금수, 난방, 오배수 등 매립배관 및 가스배관, 단부보호처리), 렌지후드(자동식 소화기 설치관련 전기·통신 배관/배선(주방TV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기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침실 볼빅이장, 드레스룸장 (도어포함), 거울, 발코니 선반, 발코니 세탁장, 발코니 수전 등 기구 및 수전일체	월패드, 각 실 온도조절기, 실내환경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발코니 확장(마감재 제외)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112.9266 [A]	112.9266 [A] - 디락방	112.6289 [B]	112.6289 [B] - 디락방	113.2968 [C]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18,650,000	18,650,000	18,610,000	18,610,000	18,72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임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 신청세대 유의사항** : - 계약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자재발주문제도 인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할문(PVC 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시공은 가능하나 타 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워 변경을 원하는 세대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화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3개월 이후에는 복합문 설치는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신청세대는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의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존형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입찰한원)을 넘는 경우 실내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현행은 분양사무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엔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및 공급 일정

● **3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2008년 4월 25일 (금)]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방 상 미성년 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과거에 당첨된 사실특별공급 당첨자 제외이 있는 경우라도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2008년 4월 25일 (금)]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여부는 청약신청시 금융결제원, 은행 등에서 사전확인 가능)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배정요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의 순으로 공급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인규비율에 따라 공급함.

- 특별공급세대

구분	112.9266㎡ (A형)	112.6289㎡ (B형)	113.2968㎡ (C형)
세대수	3세대	8세대	8세대
인천시	2	4	4
경기	1	2	2
서울	0	2	2

- 신청일시 및 장소 : 3자녀 특별공급 : 2008년 4월 28일 (월) 10:00 ~ 17:00 당사 견본주택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추첨 일시 및 장소 : 2008년 4월 29일 (화) 17:00 당사 견본주택(13:00 ~ 16:00까지 접수를 완료 하여야 함)

- 우선순위 배정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정기준	점수	비고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세대구성 (2)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3세대 이상	10	
무주택기간 (3)		2세대	5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당해 시·도 거주 기간 (4)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인천·서울·경기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 본다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년 4월 25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정기준표(신청서는 당사 견본주택 및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무주택 서약서(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

- 신청자격 : • 국민주택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항에 해당하는 자(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연금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08년 4월 25일 (금)]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대상자는 관련기관의 장이 신청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하며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됨.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임)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년 4월 29일 (화) 13:00 ~ 16:00 당사 견본주택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추첨 일시 장소 : 2008년 4월 29일 (화) 17:00 당사 견본주택

- 특별공급 대상자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국민주택	-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p>-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독세대 및 기타 본인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세대주)</p> <p>-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인감도장 - 인감증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무주택 서약서(견본주택에 비치)</p>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 배정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상기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진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주택청약 및 당첨시 처리 기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 처리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노부모부양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년 4월 25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자축기입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주민등록등본 기준) 청약자축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자격은 청약접수 받는 은행에서는 확인하지 아니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분에 대하여 계약체

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무주택 세대주기간	청약자족 납입인원금액예치	접수일차	신청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주민주택	노부모부양 우선등급	인천광역시	공고일 현재	24회 이상	2008. 4. 30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접수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터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2yoo.com - KB모바일 : Mbank, kbank, BankOn 접수시간 : 08:30 ~ 18:00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의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대화내용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시 : 2008년 5월 16일 (금) 14:00 장소 : 당사 건분주택 및 공사 홈페이지 (http://www.iudc.co.kr) •2008년 5월 16일자 문화일보에 게재 •건분주택은 2008년 5월 16일 13:00에 계약예정이며, 당첨자만 관람 가능합니다.
		수도권	공고일 현재	24회 이상			
	1순위	인천광역시/수도권	5년 이상	600만원 이상	2008. 5. 2 (금)		
			3년 이상	360만원 이상	2008. 5. 6 (화)		
2순위	인천광역시/수도권	공고일 현재	24회 이상	2008. 5. 7 (수)			
		공고일 현재	6회 이상, 24회 미만	2008. 5. 8 (목)			
3순위	인천광역시/수도권	공고일 현재	-	2008. 5. 9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접수장소 : 국민은행 - 인터넷 : www.kbsta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모바일 : Mbank, Kbank, BankOn 접수시간 : 08:30 ~ 18:0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무주택세대주기간,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및 인터넷취약자를 제외하고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및 인터넷취약자 청구 접수시간 : 09:30 ~ 16:30)

☐ 국민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은 청약자족 가입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자격 기재요령

- 거주지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시·군 단위의 거주지역(주택건설지역)
- 거주개시일 : 상기 거주지역(주택건설지역)의 전입일자를 기재(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확인)
- 무주택세대주기간 : 무주택기간과 주민등록등, 초(본)으로 확인한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하여 기재

〈 예시 〉 - 총 세대주 인정기간(6년), 무주택기간(3년) → 무주택세대주기간 : 3년
- 총 세대주 인정기간(6년), 무주택기간(9년) → 무주택세대주기간 : 6년

 -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원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함. (세대주 인정기간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부양가족수 : 아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족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제외),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입주자자족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자족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족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자족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본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자족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세대주이어야 함)
 - 입주자자족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족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세대주 인정기간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신청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일시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세대주가 사망,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주민등록번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사업장제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거나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임대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하였거나 사업장제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처분하는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장제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국민주택 노부모부양우선등급의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봄)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제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접수방법

- 중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인천광역시,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 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각기 정한 날짜에 접수하되, 각 순위자는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에만 당해 청약순위자격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공급 선우열비 신청접수결과 선공급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체대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공급 차순위 접수는 받지 않음. 단, 청약1순위 내에서 청약한집합비를 위하여 청약자족 납입인정금액 또는 회차를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하며, 납입인정금액 또는 회차별 신청일에 해당 주택형별 접수가 마감되지 않는 한 상위 납입인정금액 또는 회차 해당자가 하위 납입인정금액 또는 회차 해당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접수일에 따른 차별은 없으며 당해 주택형별로 접수된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결정함.

☐ 청약신청시 구비서류(장애인 및 노약자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서 은행 창구 접수시 필요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배우자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당 공사 건분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족통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대리신청시 배우자 인증서류 추가 제출 (주민등록 등·초본)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친비속 포함)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장식 위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도장(날인된 위임장식 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년 4월 25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된 접수한 청약신청본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구분	청약 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국민주택	전주택형	1,000만원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입수표(가능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8년 5월 19일) 이후 평일 09:30 ~ 16:30 (단, 토·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제3자의 주민등록증

-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3자녀 특별등급의 경우	일반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에 청약 신청하여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등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청약에 대한 청약은 무효처리함.
	가타 특별등급의 경우	일반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에 청약 신청하여 중복 당첨시 가타 특별등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은 무효처리함.
	일반공급의 경우	85㎡ 이하 공공보양주택은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중복신청 또는 1세대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신청순수 전체를 모두 무효처리하며, 청약자족통장 효력상실 및 채점점 제한 적용.

구분	신청방법	
특별공급	- 당사 건분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를 결정함.	
국민은행	경쟁공급	- 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지역 일반 1순위자와 함께 전어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1, 2순위에 한함)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p>(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p> <p>(3) 저축총액이 많은 자 <p>(4) 납입회수가 많은 자 <p>(5) 부양가족이 많은 자 <p>(6)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p></p></p></p>
	가타사항	- 국민은행 컴퓨터 추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순위는 청약자족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전산 추첨함. - 각 순위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1년 이상 신청자 중 낙첨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도권거주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유통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예정일** 2010년 7월 (공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금반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등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당첨자 2008년 5월 21일 ~ 2008년 5월 23일 (3일간, 09:30 ~ 16:30)

-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1순위)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후 계약을 체결함.

- ※ 국민주택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순위로 청약하여 당첨된 분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주민등록상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 적격자 여부 확인후 계약 체결함.

- 계약장소 : 당사 건분주택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정당 당첨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수도권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입수표 1통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장식 1통(용도:아파트계약용) -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확인용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거주지 등 신청자격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1년 이상 거주 확인이 필요한 자) - 무주택사실서(건분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1통(2007. 12. 31 이전에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수승계예정자 자격으로 청약자족에 가입한 자가 2008. 1. 2 이후 동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 - 장애인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2007. 12. 31 이전에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수승계예정자 자격으로 청약자족에 가입한 자가 2008. 1. 2 이후 동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 - 세대주 및 부양가족 인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기간이 확인 불가능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분리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부모부양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3년 이상 주소변동연력 표시본) /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 및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배우자가 없는 신청자(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택소유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거주대장등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외에 아래 서류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한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자변동이력"사항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후 계약체결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미계약 동·호수는 예비입주자에 공개함.

※ 계약금 전부 혹은 일부만 납부 하였더라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조건 등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무주택세대주기간,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 세부 선정 순차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국민주택 노부모부양우선공급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판명될 경우.
 - 국민주택 1순위(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 당첨자중 과거 5년 이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10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자족으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자족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자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공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당첨 및 계약체결후라도 서류결정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함.
- 공약내역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내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국민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또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분양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납부시기 :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참조
 - 납부계좌 : 국민은행 (651001-01-283362) (예금주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납부기일 내에 반드시 국민은행 지정에서만 납부하여야 하며(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시 중도금이체란에서 입금)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 요망
 - 〈※ 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등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분양가 내역 공개

- [주택법] 제38조의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등 주요 항목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세부류 포함)로 분양가격을 공시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택지비	합계	194,221,655	지붕 및 홀통공사	71,565	건축 (23)
	택지매입원가	55,436,020	창호공사	1,549,001	
	기간이자	4,568,238	유리공사	163,801	
	필요적경비	1,597,952	타일공사	1,548,498	
그밖의비용	103,800	틀공사	811,885		
공사비	토공사	287,878	도장공사	914,781	
	훈막이공사	1,035,513	도배공사	927,660	
	비밀보물공사	-	수장공사	4,693,456	
	올바닥공사	-	주방용구공사	1,122,310	
	석축공사	-	찬공사	188,952	
	우·우수공사	528,103	금수설비공사	1,194,481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4,990	급탕설비공사	774,447	
	공동구공사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3,559,182	
	도로포장공사	36,013	위생기구공사	2,352,317	
	교통신신시설물공사	37,357	송각기공사	1,036,566	
	정화조시설공사	-	난방설비공사	3,601,117	
	조경공사	4,870,129	가스설비공사	593,201	
	부대시설공사	55,400	자동제어설비공사	364,169	
공통시설공사	169,542	특수설비공사	1,003,485		
가시설물공사	3,535,785	전기	4,430,663		
지정 및 기초공사	3,063,274	위생기구공사	2,352,317		
철골공사	-	송각기공사	1,036,566		
철근콘크리트공사	24,780,680	난방설비공사	3,601,117		
용량공사	-	가스설비공사	593,201		
조적공사	819,912	자동제어설비공사	364,169		
미장공사	2,023,376	특수설비공사	1,003,485		
단열공사	294,738	전기	4,430,663		
방수·방습공사	434,190	위생기구공사	2,352,317		
목공사	1,539,171	송각기공사	1,036,566		
가우공사	2,080,699	난방설비공사	3,603,707		
골공공사	1,885,614	가스설비공사	593,201		
	그밖의 비용(1)		이음		
			설계비	2,240,000	
			감리비	3,100,000	
			일반분양시설통계(건분주택감리비) 등	5,649,542	
			분담금 및 부담금	355,015	
			보상비	-	
			기타사업비성 경비	6,575,000	
			기분할권한에 가산되는 비용	29,785,289	
※ 상기 항목별 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산정된 시전 추정 가격으로서, 준공시 소요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확인한 내용과 본인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람. (계약시 진위여부 서류대조함)
- 공공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청약당일 청약접수시간(인터넷청약 : 08:30 ~ 18:00, 청약창구 09:30 ~ 16:30)내에 한해 취소나 정정 가능)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나 주택공급 신청서상의 「주택형, 또는 「형,」란을 기재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과 건분주택(모델하우스)은 계약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건분주택 또는 당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신청호는 내용인 구조조건 등의 결과에 따라 세비별, 총별, 위치별로 청약호양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외부공간 디자인, 프레임 시공, 유리두께 등은 풍동실험 결과 및 외부인원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설치 설치로 발코니 창, 콘크리트 난간 및 창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를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께서는 수시로 설치사항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입주시까지 거주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인내분 등을 수령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사에서는 입주하신 후에 불편사항 없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도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임.
-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로도 보실 수 있으며, 당첨자도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있음.

112.92m²

마스터존과 자녀존의 동선을 분리해 가족 한 분, 한 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획기적인 2면 개방형 거실을 채택해 조망권과 채광성을 극대화했습니다

A-type 132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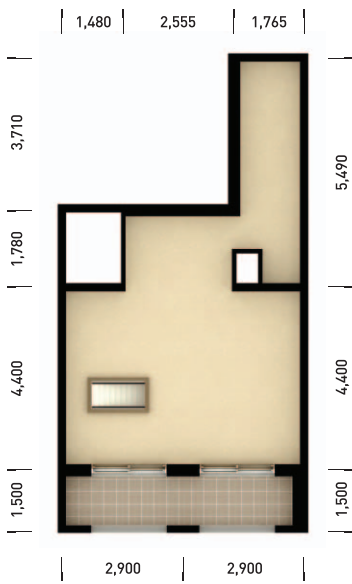
※ 공급면적 112.92m²는 과거 34평에 해당됩니다

- ▶ 전용면적 : 84.7379m²
- ▶ 주거공용 : 28.1887m²
- ▶ 공급면적 : 112.9266m²
- ▶ 기타공용 : 44.5081m²
- ▶ 계약면적 : 157.4347m²



기본형

2,260 | 1,375 | 2,555 | 1,870 | 3,825 | 1,500 | 1,335



다락방 101-107동 2002호, 2003호, 2004호



확장형

2,155 | 2,900 | 2,900 | 4,765 | 2,000



기본형



확장형



- LIVINGROOM** • 고품격 아트월(거실) • 폴리싱 타일(현관) • 고급 지문인식 도어록 • 세련된 디자인의 고품격 현관문 • 첨단기능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
- 현대적 감각의 우물천정 디자인 • 온돌마루(거실) • 에어컨용 냉매 배관(거실·인방) • 일괄소등 스위치 • 실내환기 시스템
- BEDROOM** • 온돌마루 바닥재(다락방은 톱카펫트 시공) • 실내환기 시스템 • 고급 레버형 도어 손잡이 • 드레스룸 • 화장대(인방) • 불박이장
- COOKROOM** • 디럭스 주방설계 • 고품격 주방기구와 인조대리석 상판 • 핸드센서식 절수밸브 • 음식물 탈수기 • 주방 TV • 가스오븐렌지 • 4구 가스쿡탑
- BATHROOM** • 바닥 자기질 타일 • 고급비데(부부욕실) • 고급 욕실 수납장 • 집지킴이 • 천연 대리석 선반 • 고급 세면대
- 샤워부스(부부욕실) • 바디샤워기(부부욕실) • 원격외선 설비(공용욕실)

112.62m²

채광성이 탁월한 4Bay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종일 따사로운 햇살을 즐길 수 있으며 보다 친밀하고 화목한
가족 유대를 위해 커뮤니티 발코니를 도입했습니다

B-type 280세대

※ 공급면적 112.62m²는 과거 34평에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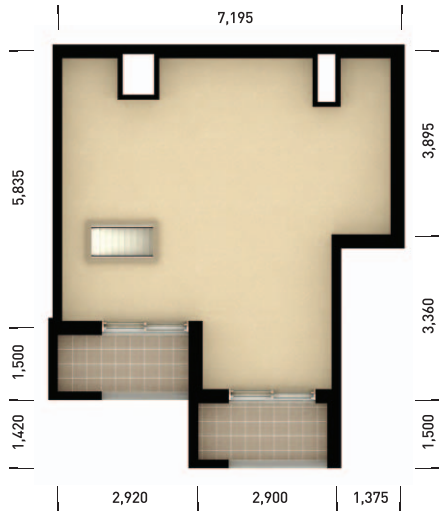
- ▶ 전용면적 : 84.4963m²
- ▶ 주거공용 : 28.1326m²
- ▶ 공급면적 : 112.6289m²
- ▶ 기타공용 : 44.3812m²
- ▶ 계약면적 : 157.0101m²



기본형



확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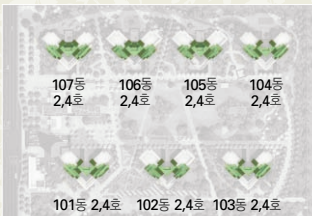
다락방 101-107동 2002호, 2003호, 2004호



기본형



확장형



- LIVING ROOM** • 고품격 아트월 (거실) • 폴리싱 타일(현관) • 고급 지문인식 도어록 • 세련된 디자인의 고품격 현관문 • 첨단기능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
• 현대적 감각의 우물천정 디자인 • 온돌마루 (거실) • 에어컨용 냉매 배관(거실·인방) • 일괄소등 스위치 • 실내환기 시스템
- BEDROOM** • 온돌마루 바닥재 (다락방은 톱카펫트 시공) • 실내환기 시스템 • 고급 레버형 도어 손잡이 • 드레스룸 • 화장대 (인방) • 불박이장
- COOKROOM** • 디럭스 주방설계 • 고품격 주방기구와 인조대리석 상판 • 핸드센서식 절수밸브 • 음식물 탈수기 • 주방 TV • 가스오븐렌지 • 4구 가스룩담
- BATHROOM** • 바닥 자기질 타일 • 고급비데(부부욕실) • 고급 욕실 수납장 • 집지킴이 • 천연 대리석 선반 • 고급 세면대
• 샤워부스(부부욕실) • 바디샤워기(부부욕실) • 원적외선 설비 (공용욕실)

113.29m²

통풍은 물론 탁 트인 개방감을 위해 거실과 주방을
통합된 공간으로 계획했으며 공간활용성이 탁월한 가변형 실내를 채택해
독창적인 공간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C-type 280세대

※ 공급면적 113.29㎡는 과거 34평에 해당됩니다

- ▶ 전용면적 : 84.9792m²
- ▶ 주거공용 : 28.3176m²
- ▶ 공급면적 : 113.2968m²
- ▶ 기타공용 : 44.6348m²
- ▶ 계약면적 : 157.9316m²



기본형



확장형



- LIVING ROOM** • 고품격 아트월 (거실) • 폴리스딩 타일(현관) • 고급 지문인식 도어록 • 세련된 디자인의 고품격 현관문 • 첨단기능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
- 현대적 감각의 우물천정 디자인 • 온돌마루 (거실) • 에어컨용 냉매 배관(거실·인방) • 일괄소등 스위치 • 실내환기 시스템
- BEDROOM** • 온돌마루 바닥재 • 실내환기 시스템 • 고급 레버형 도어 손잡이 • 드레스룸 • 화장대 (인방) • 불박이장
- COOKROOM** • 디럭스한 주방설계 • 고품격 주방기구와 인조대리석 상판 • 핸드센서식 절수밸브 • 음식물 탈수기 • 주방 TV • 가스오븐렌지 • 4구 가스룩담
- BATHROOM** • 바닥 자기질 타일 • 고급비데(부부욕실) • 고급 욕실 수납장 • 집지킴이 • 천연 대리석 선반 • 고급 세면대
- 샤워부스(부부욕실) • 바디샤워기(부부욕실) • 원격외선 살비 (공용욕실)



기본형



확장형